

【 교육과정 소위원회 시행세칙 】

[신설 2012년 11월 27일]

① **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(설치와 구성)

1.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두며, 소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2. 소위원회는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과 선출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서기를 둘 수 있다.
3. 임상의학교육 소위원회와 임상실습교육 소위원회는 위원 중 학생위원을 둔다.
4. 각 소위원회는 직원위원을 둘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[개정 2019년 3월 26일, 2020년 10월 27일, 2021년 8월 31일]

1. 기초의학교육 소위원회
2. 임상의학교육 소위원회
3. 임상실습교육 소위원회
4. 임상수기교육 소위원회
5. 문제바탕학습(PBL) 소위원회
6. 근거중심의학(EBM) 소위원회
7. 교육정보화 소위원회
8. 의료인문학교육 소위원회
9. 문항개발 및 평가 소위원회

③ **(기능)**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 심의 개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.

1. 기초의학교육 소위원회
 - 1) 의예과 자연과학, 의과학 및 의학입문
 - 2) 의학과 기초의학
2. 임상의학교육 소위원회
 - 1) 장기-계통별 통합강의

- 2) 기타 임상의학 관련 교육
 - 3. 임상실습교육 소위원회
 - 1) ICM
 - 2) 필수 및 선택 임상실습
 - 3) 기타 임상실습 관련 교육
 - 4. 임상수기교육 소위원회
 - 1) 임상수기 교육
 - 2) OSCE/CPX
 - 3) 시뮬레이션 교육
 - 5. PBL 소위원회
 - 1) PBL 교육
 - 6. EBM 소위원회
 - 1) EBM 교육
 - 7. 교육정보화 소위원회
 - 1) WBI, e-learning, 원격수업 및 관련 교육
 - 8. 의료인문학교육 소위원회
 - 1) 의예과 및 의학과 의료인문학 교육
 - 9. 문항개발 및 평가 소위원회
 - 1) 문항개발 및 문제은행의 관리(임상의학종합평가, 기초의학종합평가, 멀티미디어 문항 개발 등)
 - 2) 기타 의학교육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**(회의 및 의결)** 회의는 소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- 1.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5.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